

이튼의 공급사 행동 강령

이 강령은 이튼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공급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이튼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며, 모든 공급사 및 이들의 전세계 제휴사와 자회사에게도 적용됩니다.

1. 법률 준수

공급사는 항상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통칭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직원

공급사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 a. 공급사는 법정 최소 연령에 부합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하며, 현지 법률로 허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16세 이하의 개인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급사는 성실한 견습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15세 이상의 개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습생 프로그램은 현지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것이어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등재되어 하나 이상의 특정 산업 연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 b. 공급사는 도제 또는 노동 강요, 노예 또는 하인,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c. 공급사는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 시간,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을 설정해야 합니다. 직원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 또는 현지 업계 표준에 맞는 임금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d. 공급사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며, 존엄과 존경심으로 대하며, 체벌이나 위협, 실제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사는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성, 사회적 배경, 연령,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장애, 정치적 신념,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용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e. 공급사는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 단체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연계 및 집단 교섭의 자유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보건과 안전

이튼은 직원, 임원, 이사, 에이전트 및 하청업체(이하 "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 a. 공급사는 이튼 현장에 있거나 이튼을 대신하여 이튼 고객의 현장에 있을 때 이튼의 안전 정책, 이튼의 EHS 핸드북, 각 현장별 안전 요구조건이나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b. 공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i. 직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ii. 안전한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올바른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관리, 예방적 유지보수,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교육 등을 통해 물리적 및 화학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iii. 위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적절히 방지할 수 없을 경우, 직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iv. 기계로 인한 직원 부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체 보호 장구, 안전 연동 장치, 안전차단물 등을 제공하고 제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v. 긴급상황 대처계획 및 대응 절차를 구현하여 응급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vi.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올바른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환경

이튼은 업무 진행 시 필수 사항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합니다.

- a. 공급사는 모든 필수 환경 관련 허가 및 등록을 유지하고 그러한 허가서상의 운영 요구조건 및 보고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b. 공급사는 규제 물질 및 제품 함량 규격을 준수하며, RoHS, WEEE, REACH, California Prop. 65 및 기타 유사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물질을 사용, 함유 또는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사는 해당될 경우, 자재 신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앞서 기술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c. 공급사는 생산, 유지보수 및 시설 공정에 있어서 적절한 보존 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고체 폐기물, 오수, 배기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합니다.
- d. 공급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하지 않은 고체 폐기물, 오수 및/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전에 관리, 조절, 처리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5. 윤리 및 규정 준수

공급사는 직원, 공급사, 고객, 기타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대할 때 가장 엄격한 윤리적 행동 표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a. 공급사는 업무 활동, 조직 구조, 재무 상태,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법률 및 보편적인 업계 업무 관행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b. 공급사는 자사의 직원에 의한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 갈취, 절도 또는 횡령을 금지해야 합니다.
- c. 공급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이튼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여 이루어집니다.
- d. 공급사는 위조부품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사를 해야 합니다.
- e. 이튼은 판매하는 제품이 콩고 공화국이나 주변 국가의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법인에게서 구입할 수 있는 "분쟁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으로 제련되는 광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이튼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주석, 탄탈륨, 텅스텐 또는 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사의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포함된 경우, 분쟁과 무관한 제련소에서 제조한 금속의 존재 여부와 양에 대해 조사합니다. (ii) 이튼이 법적 의무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사의 결과를 이튼에게 보고합니다. (iii) "분쟁과 무관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금속은 분쟁과 무관한 제련소에서 조달하도록 합니다.
- f. 공급사는 윤리 위반이나 범죄 가능성과 관련하여 선의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고 혹은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해 기밀 유지 및 보호 절차를 구현해 놓아야 합니다.

6. 부패 방지

이튼은 사업 기회를 취득 또는 재취득하거나 부적절한 혜택을 얻기 위해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모든 부패 방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a. **뇌물 또는 리베이트 금지.** 공급사는 정부 기관이나 국가 공무원,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모든 종류의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정한 대금 지급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하거나, 받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b. **선물과 접대.** 공급사가 이튼과 일하거나 이튼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공급사는 합법적인 업무 목적일 경우, (i) 공급사, 고객 또는 기타 업무 제휴자에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거나, (ii) 공급사, 고객 또는 기타 업무 제휴자가 제공하는 선물이나 접대를 수락할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 선물이나 접대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어야 함,
불법적이지 않거나 이 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뇌물,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불법적인 대금 지급이 아니어야 함,
특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튼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선물을 주는 사람이 특혜, 사업 수주, 가격 할인 또는 유리한 거래 조건 등을 받는 것처럼(또는 실제적의 무나 암시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함.

7. 규정 준수 모니터링

공급사는 이튼 및/또는 그 대리인이나 에이전트가 공급사의 시설에 접근하고, 이튼에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관련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공급사와 이튼은 접근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튼의 사업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서비스 및 관련 기록에 즉각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자는 필요시 합당하게 요구하는 이튼의 접근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위법행위, 부정행위나 부패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튼과 협력함에 동의합니다.

8. 적용

공급사는 하위 공급사 및/또는 하청업체가 이 행동 강령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의 행동 표준을 준수하게끔 계약상에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튼은 공급사의 하위 공급사 및/또는 하청업체의 이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사는 요구될 시 이튼의 감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직원이 이튼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행동 강령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9. 위반

공급사는 이 행동 강령의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튼에게 즉시 보고하며 정해진 기간에 모든 비준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이튼에게 서면으로 제공). 이튼은 이후 추가 발주를 중단하고 현재 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 관계를 종료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튼은 공급사에게 적절한 비준수 사항 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Revised Version 3; 3/3/2017